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
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등록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1050호, 2025. 9. 16. 공포, 2026. 3. 17. 시행)됨에 따라,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(안 제5조)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(안 제6조)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해당없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참전유공자로서”를 “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로서”로, “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”를 “참전유공자(배우자)등록신청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”을 “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을 받으면”으로, “신청인에 대한”을 “그 요건과 관련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참전사실 확인통보서”를 “참전사실여부 확인통보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후단 중 “법 제39조제4항”을 “법 제39조제5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-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국

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참전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

2.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제1항 중 “참전유공자”를 “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(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참전유공자 또는 그”를 “참전유공자, 그 배우자 또는”으로, “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”을 “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, 그 배우자임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보훈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39조제2항”을 “법 제3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 중 “따른 참전유공자의”를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법 제39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”을 “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등록신청 및 결정 등) ① 법		제5조(등록신청 및 결정 등) ① -		
제5조제1항에 따라 <u>참전유공자</u>		----- <u>참전유공자</u>		
<u>로서</u>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		<u>및 그 배우자로서</u> -----		
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		-----		
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		-----		
<u>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</u> 를 제출		<u>참전유공자(배우자)등록신청서</u>		
하여야 한다.		-----.		
② 국가보훈부장관은 <u>제1항에</u>		② ----- <u>법 제5조제</u>		
<u>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</u>		<u>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</u>		
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(이하		<u>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</u>		
“국방부장관등”이라 한다)에게		<u>록신청을 받으면</u> -----		
<u>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</u>		<u>그 요건과 관련된</u> -----		
을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		-----.		
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		-----		
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		-----		
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	-----.		
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		③ -----		
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		-----		
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		-----		
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		-----		
로 정하는 <u>참전사실 확인통보서</u>		----- <u>참전사실여부 확인통</u>		
를 신청인과 국가보훈부장관에		<u>보서</u> -----		
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		-----.		
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		-----		

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
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
수 있으며, 그 밖에 참전사실의
확인에는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
관등이 정한다.

<신 설>

-----.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참전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
2.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적용 대상 여부와 관련하

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(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발급한다.

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

⑤ _____

----- 법 제39조제5항 -----

-----.

⑥ 제5항

① -----
----- 참전유공
자 및 그 배우자(참전유공자가
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)-----
-----.

④ -----
----- 참전유공
자, 그 배우자 또는 -----

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
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
급할 수 있다.

⑤ (생 략)

제14조(결손처분) 국가보훈부장관
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결손
처분을 하려면 「국가유공자 등
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
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
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
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6조(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
정)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
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
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
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
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, 정당한
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
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
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
다.

1. 2. (생 략)

3.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
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

-----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
유공자, 그 배우자임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결손처분) -----

----- 보훈심사위원회-----

-----.

제16조(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
정) ① -----

-----.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39조제3항-----

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

② · ③ (생략)

제18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국가
보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
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
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(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
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
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
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
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에 관한 권한 중 「제주특별자
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
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344조에
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
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.

1.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
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
의 접수, 참전사실의 확인 요
청,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

2. ~ 12. (생략)

13. 법 제39조제1항 ·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, 배제된 사람의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권한의 위임 등) ① -----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.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. The background is white, and there are no other markings or text present.

1. -----
따른 -----

2. ~ 12. (현행과 같음)

13.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
까지 및 제5항-----

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	----- --
13의2. ~ 15. (생략)	13의2. ~ 15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42